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데이터센터 추가〉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데이터센터 추가

개정안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대상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 ----- -----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설></u>	<u>13의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u>
14. (생략)	1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¹⁾”이라 함)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말 현재 공항·철도·항만 시설 등 총 5,972개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 지정·관리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제40조제1항)>

1.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의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석유비축시설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개요는 [참고1] 참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2023. 12. 31. 현재)

총계	공항 시설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시설	항만 시설	지정 문화재 시설	산업 기술 단지	산업 단지	초고층 건축물 지하 연계 복합	영화 상영관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 비축 시설	천연 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전통 시장 (점포 가 500개 이상)	발전소	물류 창고 (연면 적 10만㎡ 이상)	가스 공급 시설
5,972	16	319	731	101	2,270	20	200	400	230	1,131	29	113	48	171	50	143

자료: 소방청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되면 일반적인 특정소방대상물²⁾의 경우와 달리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수립·시행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상이 되며(제40조제2항 및 제3항), 한국소방안전원 등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제41조)³⁾, 연 1회 이상 화재안전조사, 합동소방훈련, 소방교육 실시 등 공적 관리가 강화됨⁴⁾.

2)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024년 6월 말 현재 전국에 약 230만개 소가 지정되어 있음.

3)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상세 내용은 [참고 2] 참조

4) 현행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됨.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비교〉

(2023. 12. 31. 현재)

구 분	특정소방대상물	특별관리시설물
관련근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제1항
종류	시행령 [별표2]에 규정	법률 제40조제1항 각호에 규정
관리감독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소방본부, 소방서장
안전계획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화재예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관리형태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관리	관계인 + 공적관리 강화
소방시설 점검	관계인의 자체 점검	관계인의 자체 점검,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 조사 주체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화재안전 조사 방법	소방 단독	소방, 전기, 가스, 건축 등 합동
대상수량	2,628,393	5,972

※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데이터센터의 화재예방을 위한 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⁵⁾.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⁶⁾에 따른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서 2024년 현재 국내에 192개소가 있음.

5) 개정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국내 데이터 센터 현황>

□ 일반 현황

- '00년(53개) 이후 국내 데이터센터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4년 192개
 - * 증가추이 : 53개('00) > 114개('12) > 136개('16) > 155개('18) > 158개('19) > 156개('20) > 192('24)
 - 정부·공공영역의 데이터 센터는 192개소(공공 103개, 민간부분은 89개)
 - * (공공)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센터 44개 / 소속 공공기관 센터 59개
 - * (민간) 상업용 센터 45개 / 자사의 서비스를 위해 구축하는 자사용 센터(금융/IT 기업) 44개
- ※ 자료출처 : 공공(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모일반 현황

- 정보통신망법 상 보호조치 대상 데이터센터(89개) 중, 전산실 바닥면적 기준 대형 (2,000㎡)이상 센터는 전체 73%, 전력수전용량기준 20,000kW 이상 센터는 39.3%

상면기준	비율(%)	전력수전용량기준	비율(%)
중소형(2,000㎡ 이하)	27.0%	10,000kW 미만	36.0%
대형(2,001~7,500㎡)	43.8%	10,000~19,999kW	24.7%
거대(7,500~22,500㎡)	28.1%	20,000~40,000kW	25.8%
메가(22,501㎡~)	1.1%	40,000kW~	13.5%
계	100.0%	계	100.0%

* 민간 데이터센터(89개 기준) 기준

※ 자료: 소방청

데이터센터의 화재 시에는 직접적으로는 배터리 랙 손실, 전력케이블 손실 등의 재산피해와 더불어 간접적으로는 데이터서버 차단에 따른 통신장애 등 사회적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⁷⁾, 2000년 이후 국내 데이터센터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이⁸⁾를 볼 때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관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보임.

다만,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현행 법령의 내용이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현행 법령을 살펴보면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⁹⁾ 사고 이후,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데이터센터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지진·수해 등 각종 재해로부터 데이터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물리

7) 2010년 이후 발생한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는 과천 삼성SDS 건물 화재(2014.4.20.),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2022. 10. 15) 등이 있는데, 특히, 2022년 10월 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의 경우 리튬이온배터리 랙 전소 등의 재산피해 외에 데이터서버 차단에 따른 통신장애로 일반인이 다음,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간접적·사회적 피해가 컸었음.

8) 데이터센터 증가추이 : 53개('00) > 114개('12) > 136개('16) > 155개('18) > 158개('19) > 156개('20) > 162개('21) > 153개('23) > 192개('24)
(출처: 한국데이터산업협회 등)

9) 2022년 10월 15일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피해접수 건수 : 105,116건
(유료서비스 피해 : 14,918건 / 금전적 피해를 언급한 무료서비스 피해 : 130,198건)
(자료: 소방청)

적·기술적 조치와 같은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¹⁰⁾),

구체적으로 화재 등의 재난에 대비해서 열 또는 연기 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음(「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제4항제4호 및 제5호¹¹⁾).

또한 2022년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¹²⁾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제35조제1항제5호)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제35조제2항) 이를 이행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행관련 지도와 점검을 받아야 함(제36조의2)¹³⁾.

10) 구체적인 조문은 [참고 3] 참조

11) - 개정일: 2024. 5. 23., 시행일 2024. 6. 1.

- 동 개정 전에도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하는 조치(제4조제4항제2호)를 이미 시행하고 있었음.

- 구체적인 조문은 [참고 3] 참조

12) 개정일 2023. 1. 3.

13) 구체적인 조문은 [참고 3] 참조

<데이터센터 관련 화재안전관리 현황>

구분	현행 법령에 따른 데이터센터 관련 화재안전관리 현황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안전관리 내용
관리 형태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 3급)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점검 대상으로 관리(‘24년 89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7조)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통계 관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 관리(‘24년 9개)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제1항제5호)	매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화재안전조사 실적 등 통계 작성
관리 계획	-방송통신재난관리 수립지침, 관리계획, 기본계획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과기정통부(수립지침, 기본계획), 주요통신사업자(관리계획)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	소방청(기본계획), 시도본부(시행계획)
소방 시설 자체 점검	-중요통신시설 등급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A급 1개월)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시설 등급 지정 및 관리 기준」 제12조) -건물규모 따라 소방시설점검 (연1회 자체점검, 전문기관 위탁점검)	건물규모 따라 소방시설점검 (작동점검, 종합점검)
화재 안전 조사	-소방서 주관 표본조사(소방 단독) -과기정통부 주관 안전점검 (「방송통신발전법」 제36조의2) -중앙전파관리소 주관 안전점검(건축·전기설비·소방설비·재난 등 합동)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9조제1항, 제3항)	소방청 주관 전수조사 (소방,전기,가스,건축,위험물 등 합동)
화재 예방 안전 진단	(해당없음)	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진단 (소방,전기,가스,건축,위험물 등 종합)
	(해당없음)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
	(해당없음)	정량평가, 정성평가

소방 교육	-자체교육(필수) : 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동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제5항) -소방관서 교육(필요시)	자체교육(필수) 소방관서 교육(매년)
소방 훈련	-자체훈련(필수) :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별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 중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소방관서 합동훈련(특급, 1급은 매년, 기타는 필요시) :연1회 이상 소방·전기 관계기관과 합동 모의 훈련 실시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별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 중 시설보호계획 및 업무연속성 계획)	자체훈련(필수) 소방관서 합동훈련(매년)
수량	192	5,972

(자료: 데이터센터 화재안전관리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화재안전관리 내용- 소방청)

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센터 화재 발생 시 미치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영향을 고려할 때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로서 소방안전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통해 화재관련 재난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모의훈련, 교육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서, 데이터센터 사업자¹⁴⁾에게 중복부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령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¹⁵⁾.

<현행 법령에 따른 데이터센터 관련 설비 및 안전점검 현황>

법령	주요내용	주무부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이행점검의 근거 법령 -연 1회를 주기로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전 분야의 구조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진행(단 SW 부분은 제외)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상업용/비상업용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상업용 데이터센터 일부를 배타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자(서버의 독자적 운영 통제권을 가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14) 참고로 데이터센터 분야 단체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및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에서, 현재 데이터센터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정보통신망법」,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을 통해 화재 관련 재난관리계획 수립, 안전점검, 모의훈련, 교육 등을 이미 강도 높게 수행하고 있고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중복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증가에 비해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계간 정보 교류, 네트워킹 강화 활동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체로, KT 등 132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임.

*한국데이터센터에너지효율협회는 데이터센터 및 기반 기기·설비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단체로, 삼성SDS 등 91개 회원사로 구성되어 이는 민법 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임.

15) 참고로 특정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하기 위한 관련 부처 간의 협의는 법률 입안 과정에서 의견조치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전기사업법	-발전설비 및 전기수용설비 정기검사의 근거법령 -발전 및 전기설비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설비의 유지 및 운용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 -전기수용설비 계통은 연 1회, 발전기는 3년 1회를 주기로 점검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안전 관리법	-전기설비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의 근거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전기설비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24.7.1.부터 무정전전원장치(UPS) 정기검사 시행 예정	산업통상 자원부
기계설비법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근거 법령 -연 1회를 주기로, 연면적 10,000㎡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상태를 점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근거(작동, 종합)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소방 설비 별 구조·기준 등이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	자체점검 전문기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안전조사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근거 -화재안전조사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 등의 사항을 검토 선정함(샘플조사)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전문기관이 소방, 전기, 건축, 위험물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진단대상 전수)	관할 소방서 소방청 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산업	-데이터센터의 구조적 안정성을 평가 -정밀 안전점검은 3년 1회,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 1회를 주기로 시행	국토교통부
산업안전 보건법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근거 법령 -2년 1회를 주기로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발전기 등 압력용기의 배관, 용접 등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	고용노동부
정보통신 공사업법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의 근거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4.7.19.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는 연 1회를 주기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 1회를 주기로 설비 점검 후 점검표를 기록해야 함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료: 데이터센터연합회)

문 의 처
02)6788-5351

참고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개요

자료: 소방청

□ 개 념

-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 현 황

- 법 제40조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항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현황 >

총계	공항 시설	철도 시설	도시 철도 시설	항만 시설	지정 문화재 시설	산업 기술 단지	산업 단지	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	영화 상영관 (수용 인원 1000명 이상)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석유 비축 시설	천연 가스 인수 기지 및 공급망	전통 시장 (점포가 500개 이상)	발전소	물류 창고 (연면적 10만㎡ 이상)	가스 공급 시설
5,972	16	319	731	101	2,270	20	200	400	230	1,131	29	113	48	171	50	143

□ 안전관리

- (소방청)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주기)

◇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점검·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시·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매년)

◇ 시행 계획의 주요 내용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정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 (목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함
- (주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 *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 (진단대상)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866개소)
- (진단시기) 최초, 정기 진단 및 경과조치

① (최초) 사용승인·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② (정기) 진단 결과 안전등급*에 따라 4~6년 주기로 안전진단

구분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불량(E)
진단주기	6년	5년		4년	

③ (경과조치) 기존 대상물은 유예기간 내에 안전진단 실시

대상	공항시설, 공동구	철도시설, 항만시설	도시철도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기한	'23. 12. 31.	'24. 12. 31.	'25. 12. 31.	'26. 12. 31.
대상	46	176	560	106

- (면제혜택) 화재예방안전진단 받은 연도에는 소방훈련과 교육 및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봄
- (진단기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진단기관
- (진단신청) 관계인이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 신청

- **(수수료)** 진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예방법시해규칙 별표9 참고)
※ 정확한 수수료 산출은 한국소방안전원(02-2679-8744) 또는 진단기관에 문의

- **(진단범위)** 화재위험요인조사, 위험성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①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②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⑤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 지진 등 외부 화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 **(결과제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이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

- **(조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명령

□ **(처벌기준)**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

- **(사법처리)**

- ① 보수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 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치명령)** 진단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예방 안전진단 대상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43조]

연번	시설	각 시설 별 대상
①	공항시설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 공항시설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②	철도시설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 철도시설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③	도시철도시설	역사 및 역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의 도시철도시설
④	항만시설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 항만시설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⑤	공동구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⑥	천연가스 인수기지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
⑦	발전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발전소 :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⑧	가스공급 시설	가연성 탱크 용량 합계 100톤 이상 또는 저장용량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참고 3

국내 데이터 센터 현황*

(출처: 소방청)

□ 일반 현황

- '00년(53개) 이후 국내 데이터센터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4년 192개
 - * 증가추이 : 53개('00) > 114개('12) > 136개('16) > 155개('18) > 158개('19) > 156개('20) > 192('24)
- 정부·공공영역의 데이터 센터는 192개소(공공 103개, 민간부분은 89개)
 - * (공공)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센터 44개 / 소속 공공기관 센터 59개
 - * (민간) 상업용 센터 45개 / 자사의 서비스를 위해 구축하는 자사용 센터(금융/IT기업) 44개
- ※ 자료출처 : 공공(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민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규모일반 현황

- 정보통신망법 상 보호조치 대상 데이터센터(89개) 중, 전산실 바닥면적 기준 대형(2,000㎡)이상 센터는 전체 73% 전력수전용량기준 20,000kW 이상 센터는 39.3%

상면기준	비율(%)	전력수전용량기준	비율(%)
중소형(2,000㎡ 이하)	27.0%	10,000kW 미만	36.0%
대형(2,001~7,500㎡)	43.8%	10,000~19,999kW	24.7%
거대(7,500~22,500㎡)	28.1%	20,000~40,000kW	25.8%
메가(22,501㎡~)	1.1%	40,000kW~	13.5%
계	100.0%	계	100.0%

* 민간 데이터센터(89개 기준)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정보통신시설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3. 1. 3.>

1.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
2.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직접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사항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 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및 제3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자료제출 요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4조제6항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 3.>

⑤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하여는 제64조의2를 준용

한다. <신설 2023. 1. 3.>

⑥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들은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⑦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이행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출입 통제를 하는 등 임차시설을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 3.>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과 제6항에 따른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 3.>

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제6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들의 보호조치)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23. 7. 3.>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자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자

가.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

②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8., 2019. 6. 11., 2021. 12. 7., 2023. 7. 3.>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수립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3. 7. 3.>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4조제4항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① 사업자는 집적정보통신시설에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하고 지진, 수해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력관련시설(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의 상황파악 및 통제를 위한 전력감시실 또는 중앙감시실을 설치할 것
2. 전력공급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패스 전환이 가능한 UPS(무정전 전원장치)와 축전지설비를 보유하고, 장시간 외부에서의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자체 전력공급을 위한 자가발전설비를 구비할 것. 이 경우, 자가발전설비 가동을 위한 유류탱크는 반드시 방화벽으로 공간을 분리할 것
3. 수전, 변전 및 배전기능을 갖춘 수변전실을 두어야 하며 배전반에 단락, 지락, 과전류 및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할 것
4. 주요시설에는 기존 조명설비의 작동이 멈추는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조명을 설치할 것
5. 재난발생으로 인해 예비전력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전력공급의 이중화 체계를 갖추고, 전원차단이 불가피한 경우 차단구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의 각종 전원장비에 대한 접지시설을 할 것
2. 전산실에 온습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것
3.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4. 배터리실 내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고, 리튬배터리 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지관리시스템(BMS) 및 추가적인 화재사전탐지 시스템을 병행 운용할 것
5. 리튬배터리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UPS-배터리 간 연결

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할 것

③ 사업자는 도난 및 테러 등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산실은 천장을 통하여 외부와의 왕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2. 주요시설이 설치된 건물내부의 창문을 강화유리로 설치하고 개폐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④ 사업자는 지진, 수해 및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집적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물은 UPS 등 무거운 장비의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한 내력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하중분산시설을 설치할 것
2. 건물은 물리적 충격 및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및 내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방화문을 설치할 것
3. 누수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시설의 천장 및 바닥은 방수시공을 하고, 특히 주요시설이 지하공간에 있는 경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예상침수 높이까지 물막이판 및 배수시설도 설치할 것
4. 전 지역에 열 또는 연기감지 센서 등을 설치하고, 설치된 배터리의 종류에 따라 화재진압이 용이한 소화설비를 구비할 것
5. 리튬배터리실 내부에 가연성가스 등으로 인한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⑤ 사업자는 지진, 수해,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요시설 설비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주요시설 설비 안전운영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주요시설 설비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부터 변경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때 관련전문가는 건축·전기 설비·소방설비·재난 등 변경사항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를 말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하 “방송통신재난”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2017. 7. 26., 2018. 12. 24., 2023. 1. 3.>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한정하되,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으로서 시설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3.>

1.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방송통신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방송통신설비와 그 설치 지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우회 방송통신 경로의 확보
- 나. 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제

의 구성

다. 피해복구 물자의 확보

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

4. 그 밖에 방송통신재난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3. 7. 3.>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2 이상인 자

③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7. 3.>

1. 운영·관리하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 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메가와트 이상일 것
2.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II 수립지침

1. 사전 예방활동 강화

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예방 통신시설 보호

- (화재)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화재 취약점 조사 및 개선
 -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중요통신시설별 화재 취약점을 식별하여 취약점별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에 화재 취약점 현황 및 보강 계획을 보고
 -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시설별로 소방 설비 현황을 관리하고, 관리계획에 소방시설 설치 및 대개체 현황·계획과 관리계획 이행 현황 또는 대안조치 이행계획을 보고

소방시설	주요 관리기준
열·연기감지센서	· 시설 전 지역에 열감지 또는 연기감지 센서 설치
소화설비	· 배터리 유형 등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소화설비 설치
방화문	· 화재 발생 시 주요시설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설치
급속배기장치	·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 내부 가연성가스로 인해 내부압력이 발생하는 경우, 파열 또는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급속배기장치 설치 ※ 급속배기장치 예시 : 배풍기배출덕트후드 등을 이용하여 배터리실 내부의 가연성 가스 및 압력을 낮추기 위해 강제적으로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

마. 통신재난관리 인력 구성 및 교육

○ 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본사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중요통신시설별 재난대응담당자(정/부)를 지정하여, 각각에게 역할 및 임무를 부여하고 관리계획에 지정현황을 보고

※ '23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을 기준으로, 1조원 이상의 사업자는 통신재난 관리 전담부서,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은 2인 이상의 전담인력 운용

※ 지정현황은 부서명, 직책, 성명을 포함하여 작성

- 중요통신시설마다 주요통신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재난 대응인력을 24시간 운용하고, 관리계획에 재난 대응인력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

○ 통신재난관리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성

- 본사 재난관리 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 인력 및 중요통신시설별 재난 담당자 간의 비상연락망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담당자를 지정하여 항상 현행화를 유지

- 전사에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관리계획에 비상연락망 구성 현황을 보고

○ 중요통신시설별 상시대응 인력체계 운용

- 중요통신시설에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경비인력 및 주요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기술자*를 운용하고, 관리계획에 인력 현황과 추진 계획을 보고

*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이 가능한 시스템관리, 네트워크관리, 전기를 담당하는 인력(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을 의미

o 내부 교육훈련

- 통신재난관리에 관련한 직원의 전문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관리계획에 교육 실적과 계획을 보고

※ 교육 내용 예시 : 사전 예방활동, 통신재난 대비, 재난 발생시 대응 및 복구

o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

- 본사의 재난관리 책임자,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전담인력 및 중요통신시설의 재난대응담당자(정/부)는 주기적으로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계획에 교육 결과와 계획을 보고

※ (교육주기) 신규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한 지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매 2년마다 교육을 받음

- 통신재난 담당자의 재난관련 자격증 보유를 권고하고, 관리계획에 현재 자격증 보유 현황과 회사 차원의 자격증 보유 지원 계획을 보고

(중략)

2. 통신재난 대비 역량 향상

나. 재난 유형별 모의 훈련

○ 과기정통부 주관 통신재난대비 모의훈련 시행

- 주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는 을지연습, 안전한국훈련 등 모의훈련에 대한 적극 협조 및 참여 필요
- 전년도에 정부와의 통신재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을 경우 관리 계획에 실적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중요통신시설별 긴급복구 모의훈련

- 실제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은 소방·전기 지역기관 등과 합동 훈련을 실시
- 관리계획에 전년도 긴급복구 모의훈련 결과와 추진 계획을 보고

※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자체 훈련 실시 후 결과에 대한 유관기관 강평 자료 여부 확인

* 사업자 합동 훈련 요청 공문 및 유관기관의 훈련 불가 통보 공문 필요